

##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

한국장학재단 ·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귀중

본인은 한국장학재단(이하 '재단')의 국가장학금(이하 "장학금")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,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1.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

본인은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수혜한 국가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,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, 전액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.

○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

| 반환사유 발생일                   | 반환기준           | 반환 금액 산정(예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          |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| 2,166,666원<br>※ 2,600,000원 × 5/6 |
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| 1,733,333원<br>※ 2,600,000원 × 2/3 |
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| 1,300,000원<br>※ 2,600,000원 × 1/2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       | 반환하지 않음        | 반환금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

### ○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할 경우 수혜횟수 차감처리 예시

[상황] 국가장학금 I 유형 260만원 수혜하였으나, 학기 개시일로부터 40일 지난 시점에 자퇴할 경우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1,733,333원을 반환할 수 있음.

- (1) 일부반환: 반환기준에 따라 260만원 중 1,733,333원만 반환(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) 후 수혜기회를 1회 사용하게 됨
- (2) 전액반환: 260만원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수혜기회 1회를 잃지 않고 다른 대학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음

※ 위 사례 외에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을 확인하여 비교한 뒤 일부 또는 전액 반환여부 및 수혜횟수 차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.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(택 1)

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,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